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076호

제출년월일 2022. 10. 4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(출자)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함.

다. 출자·출연금액

- 출연 예정금액 : 47,490천원

라. 주요사업
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
- 지방세수 확충과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,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
- 지방세제 개편 등 정책 연구

마.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- 바. 출연 예정금액: 47,490천원
- 사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천원)

2023년도	2022년도	전년대비
시 출연금	시 출연금	증감액
47,490	44,160	증 3,330

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,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세정 운영 개선이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